

수원지방법원 2023. 5. 25 선고 2022나75174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]

전 문

원고, 항소인 A

피고, 피항소인 B

변 론 종 결 2023. 4. 13.

판 결 선 고 2023. 5. 25.

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. 1. 25. 선고 2021가소5427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2,14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. 11. 17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가 C 현장소장 D의 요청으로 2016. 11. 17. 피고에게 E 신축공사현장의 인건비로 214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.

나.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 펌프카를 임대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책임이 없으므로 위 돈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나, 위 가.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D의 요청으로 인건비를 송금한 이상 이는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하므로(민법 제469조 제1항)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을 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은희, 판사 이국현, 판사 김용태